
소 장

원고 이 기 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찬 진

피고 서울관악구청장

서울고등법원

귀중.

서원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인제 · 이오영 · 김진국 · 이원재 · 이찬진

서울 · 서초구 서초동 1656-1(성재빌딩 6층) 대표 ● 대표전화: 525-3660 ● 팩스: 525-3663

소 장

원고 이 기 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찬 진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56의 1 성재빌딩 6층

전화번호 : 525-3660 팩스 : 525 -3663

피고 서울 관악구청장

노령수당지급대상자 선정제외처분 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1994. 12. 8 .자로 원고에게 한 94년도 노령수당 지급대상자선정제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1929. 9. 2.에 출생하여 처인 소외 방월희와 함께 주소지에서 거주

서원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인제 · 이오영 · 김진국 · 이원재 · 이찬진

서울 · 서초구 서초동 1656-1(성재빌딩 6층) 대표 ● 대표전화 : 525-3660 ● 팩스 : 525-3663

하고 있으며, 1991년부터는 생활보호법상의 자활보호 대상자로 지정되어 생활하여 왔습니다.

2. 원고는 1994. 12. 5. 피고에게 노령수당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12. 8.자로 원고가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94 보건사회부 노인복지사업지침(이하 '위 지침'이라고 함)의 규정에 의거 만 70세이상의 생활보호대상 노인에게만 지급되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가 70세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건 제외처분을 하였습니다.(갑제1호증 노령수당지급신청에 대한 통보)

3. 본건 처분의 위법성

가. 노인복지법 제13조 제1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노령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서는 “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노령수당의 지급대상자는 65세 이상의 자중 소득수준 등을 참작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위임된 범위는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한 대상자 선정 기준”에 관한 것일 뿐임은 문면상 명백합니다. 그럼에도 보건사회부장관이 위와같은 기준을 정하면서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65세 이상”이라는 요건을 훨씬 더 강화하여 “70세 이상”으로 이를 정한 것은 명백히 위법하며 이부분은 당연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다. 더구나 원고는 생활보호법 소정의 생활보호대상자 중 자활보호대상자입니다.

서원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인제 · 이오영 · 김진국 · 이원재 · 이찬진

서울 · 서초구 서초동 1656-1(성재빌딩 6층) 대표 ●대표전화 : 525-3660 ●팩스 : 525-3663

1994. 12. 23.

위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찬 진



서울고등법원

귀중.

서원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인제 · 이오영 · 김진국 · 이원재 · 이찬진

서울 · 서초구 서초동 1656-1(성재빌딩 6층) 대표 ●대표전화: 525-3660 ●팩스: 525-3663

특 발 인

74739149

소 장

원고 이 기 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찬 진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56의 1 성재빌딩 6층

전화번호 : 525-3660 팩스 : 525 -3663

피고 서울 관악구청장

노령수당지급대상자 선정제외처분 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1994. 12. 8 .자로 원고에게 한 94년도 노령수당 지급대상자선정제 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구 청 장	<i>[Signature]</i>	결재응람	부구청장 <i>[Signature]</i>
일시	1994. 12. 28	91	시민국장 <i>[Signature]</i>
리과		<i>[Signature]</i>	가정복지과장 <i>[Signature]</i>
			가정복지계장 <i>[Signature]</i>

서원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인제 · 이오영 · 김진국 · 이원재 · 이찬진

서울 · 서초구 서초동 1656-1(성재빌딩 6층) 대표 ●대표전화 : 525-3660 ●팩스 : 525-3663

원본대조필

청 구 원 인

1. 원고는 1929. 9. 2.에 출생하여 처인 소외 방월희와 함께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1991년부터는 생활보호법상의 자활보호 대상자로 지정되어 생활하여 왔습니다.
2. 원고는 1994. 12. 5. 피고에게 노령수당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12. 8.자로 원고가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94 보건사회부 노인복지사업지침(이하 '위 지침'이라고 함)의 규정에 의거 만 70세이상의 생활보호대상 노인에게만 지급되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가 70세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건 제외처분을 하였습니다.(갑제1호증 노령수당지급신청에 대한 통보)

3. 본건 처분의 위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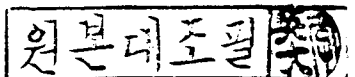
가. 노인복지법 제13조 제1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노령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서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노령수당의 지급대상자는 65세 이상의 자중 소득수준 등을 참작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위임된 범위는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한 대상자 선정 기준”에 관한 것일 뿐임은 문면상 명백합니다. 그럼에도 보건사회부장관이 위와같은 기준을 정하면서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65세 이상”이라는 요건을 훨씬 더 강화하여 “70세 이상”으로 이를 정한 것은 명백히 위법하며 이부분은 당연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서원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인제 · 이오영 · 김진국 · 이원재 · 이찬진

서울·서초구 서초동 1656-1(성재빌딩 6층) 대표 ● 대표전화 : 525-3660 ● 팩스 : 525-3663



1994. 12. 23.

위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찬 진



서울고등법원 귀중.

서원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인제 · 이오영 · 김진국 · 이원재 · 이찬진

서울 · 서초구 서초동 1656-1(성재빌딩 6층) 대표 ● 대표전화 : 525-3660 ● 팩스 : 525-3663

